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27 호

2013년 8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2

예 규

- 예규 제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규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5

공 고

- 공고 제2013- 126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7
- 공고 제2013- 1267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8
- 공고 제2013- 1276호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 9
- 공고 제2013- 128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14
- 공고 제2013- 1285호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15
- 공고 제2013- 1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3- 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8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3- 1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45

고 시

- 고시 제2013- 77호 도로명주소 변경 46
- 고시 제2013- 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7
- 고시 제2013- 80호 도로명주소 폐지 48
- 고시 제2013- 82호 도시관리계획(동네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0
- 고시 제2013- 83호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인가 고시 5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중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인용되는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의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이 훈령은 시행 후 2013년 9월 6일 폐지한다.

[별표] 훈령

자치법규 제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제3항	행정지원국장	안전행정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 국외여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 1	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 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 중	출장소	삭제	
	제2조 제1호	출장소	삭제	
	별표 2	“도시공원과” “정보미디어과” “재난방재과”	“공원녹지과” “홍보미디어실” “안전관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 업무 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11조 제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척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문화홍보실	홍보미디어실	
	제7조 제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관 리통제 규정	제10조	법무의회담당	법무평가담당	
	제2조 제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출장소	삭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관 리통제 규정	제5조 제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4조 제1호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제4조 제2호	주무담당	주무팀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계사 무처리 규정	제4조 제3호	주무	팀장	
	제7조 제3항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상 감사 규정	제2조 제4항마목	출장소	삭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6조 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 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장”	“기획예산실장” “도시관리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3조 제4항	기획감사실장 또는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또는 안전행정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지 도감독 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7조 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7조 제2항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8조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9조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10조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제17조 중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자치법규 제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남동구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별표 2 서식 중	총무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홍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사회산업국장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수산개발과장	
		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교통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토지정보과장	
	별표 3 서식 중	총무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홍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민원지적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산업국장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수산개발과장	
		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건축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13년도 정부조직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훈령 내에 변경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물론, 효율적·능동적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유 훈령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불일치 사항 일괄정비 (별표 참고)

예 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규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30일

남동구 예규 제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규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규 중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인용되는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의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는 시행 후 2013년 9월 6일 폐지한다.

[별표] 예규

자치법규 제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남동구법 제사무처리지침	I 조례 4 가 (3) (가) 나	기획감사실	기획예산실	
	조례 4 가 (3) (가) 다	기획감사실	기획예산실	
	조례 4 가 (3) (가) 라 (1)	내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조례 4 가 (3) (가) 라(1) 예시문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조례 4 가 (3) (가) 라 (3)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조례 4 가 (3) (가) 마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조례 4 가 (3) (가) 바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조례 4 가 (3) (가) 사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조례 4 가 (3) (가) 아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규칙 4 다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규칙 4 라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실장” “안전행정부장관”	
	규칙 4 마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II 2 가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II 2 나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II 2 가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 사무처리 요령	1.나	실·단·과	실·과	
	1.다.(1)	실·단·과	실·과	
	3.라.(1)	실·단·과	실·과	
	4.가.(2)(다)	실·단·과	실·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 정정보자료관리지침	2. 가)	문화홍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2. 다)	문화홍보실	홍보미디어실	
	3. 가) 1) 구청	“문화홍보실” “행정자치부”	“홍보미디어실” “안전행정부”	
	3. 가) 1)	“문화홍보실” “행자부”	“홍보미디어실” “안전행정부”	
	4.	문화홍보실	홍보미디어실	
	별표1	문화홍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별지 제1호 서식	문화홍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13년도 정부조직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예규 내에 변경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물론, 효율적·능동적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유 예규 중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불일치 사항 일괄정비 (별표 참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 처분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8. 26 ~ 9. 9 (14일간)
2. 공고의 내용

1. 제 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사항 알림		
2. 당 사 자	성 명	임학수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61010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0-1(구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4. 법적근거 및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의 취소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락처 - 전화 032-453-2482, 팩스 032-453-247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67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사업(13수용0123)]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2013. 7. 18일자 송부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 종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사업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8. 26 ~ 9. 9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2)
6. 공시송달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연번	성 명	송달주소	상세주소
1	미등기(조선신*주식회사)	미 상	미 상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8. 기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76호

**도시계획시설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명 칭 : 도림3지구 소3-1호선,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8.28 ~ 2013.9.12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91)

6. 수용재결신청물건 : 사업자 제시액 조서(붙임참조)

7. 기타사항 :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비치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기간 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 사업명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당초	편입	공부	실제		온누리감정평 가법인	통일감정평 가법인			
1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39	272-61		전	2	966,00	976,000	971,000	김×금 (1/1)	
2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60	272-78		전	52	25,116,000	25,376,000	25,246,000	김×금 (1/1)	
3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26	272-68		전	1	483,000	498,000	490,500	조×석 (1/1)	
4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26	272-69		전	2	966,000	996,000	981,000	조×석 (1/1)	
5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48	272-73		도	13	2,132,000	2,119,000	2,125,500	조×석 (1/1)	
6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25	272-49		도	15	2,460,000	2,445,000	2,452,500	조×석 (1/1)	
7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43	272-71		전	2	966,000	986,000	976,000	조×석 (1/1)	
8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20	266-56		도	191× 85/214	12,441,770	12,062,500	12,252,130	신×철 (1/4)	
9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20	266-57		도	1× 85/214	65,140	63,200	64,170	신×철 (1/4)	
10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37	266-53		전	52×1,23 8/2,796	10,890,500	11,120,700	11,005,600	신×철 (1/3)	
11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46	266-67		전	82	39,196,000	39,606,000	39,401,000	곽×례 (1/1)	
12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46	266-68		전	75	35,850,000	36,225,000	36,037,500	곽×례 (1/1)	
13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26	266-62		전	146	69,788,000	70,518,000	70,153,000	곽×례 (1/1)	
14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45	266-66		전	1	312,000	334,000	323,000	곽×례 (1/1)	
15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1	266-54		대	6	6,114,000	6,324,000	6,219,000	허×호 (1/1)	
16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1	266-72		대	1	1,019,000	1,054,000	1,036,500	허×호 (1/1)	
계						496.9	205,765,410	213,703,390	209,734,40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 사업명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도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액(원)			소유자 명 (지분율)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수량)	단가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당초	편입					온누리감정 평가법인	통일감정 평가법인			
1	인천 남동구 도림동		272-42	철파이프웬스	L:36	1식		580,000	540,000	560,000	조×석 (1/1)	
2	인천 남동구 도림동			니티나무		4주	일식	580,000	545,000	562,500	조×석 (1/1)	
3	인천 남동구 도림동			벚나무		2주	“					
4	인천 남동구 도림동			주목		5주	“					
5	인천 남동구 도림동			관상수		2주	“					
6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37	266-53	능망형웬스	L:40.5	1식		2,100,000	2,000,000	2,050,000	신×철 (1/3)	
7	인천 남동구 도림동			대문	목재,L:2	1식		320,000	300,000	310,000	신×철 (1/3)	
8	인천 남동구 도림동			창고	철파이프조/ 목조4.5×4.5	1식		500,000	500,000	500,000	신×철 (1/3)	
9	인천 남동구 도림동			개나리 울타리	L:34	1식	일괄	450,000	460,000	455,000	신×철 (1/3)	
10	인천 남동구 도림동			미상수		3주	“					
11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26	266-62	메쉬웬스	L:23	1식	식	1,380,000	1,265,000	1,322,500	곽×례 (1/1)	
12	인천 남동구 도림동			담장	L:4	1식	일괄	20,000	20,000	20,000	곽×례 (1/1)	
13	인천 남동구 도림동			조경석		1식	일괄	430,000	400,000	415,000	곽×례 (1/1)	
14	인천 남동구 도림동			단풍나무		1주	일괄	2,850,000	2,630,000	2,740,000	곽×례 (1/1)	
15	인천 남동구 도림동			주목		13주	“					
16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나무		6주	“					
17	인천 남동구 도림동			측백나무		4주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 사업명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도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수량)	단가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당초	편입					온누리감정 평가법인	통일감정 평가법인			
18	인천 남동구 도림동			회양목		1주	“					
19	인천 남동구 도림동			철쭉		150주	“					
20	인천 남동구 도림동			원두막	조립식목조	1식		1,300,000	1,200,000	1,250,000	곽×례 (1/1)	
21	인천 남동구 도림동			관정		1개		1,600,000	1,550,000	1,575,000	곽×례 (1/1)	
22	인천 남동구 도림동			파고라	조립식목조	1식		900,000	900,000	900,000	곽×례 (1/1)	
23	인천 남동구 도림동		266-62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골조	56.3/56.3	식	850,000	840,000	845,000	곽×례 (1/1)	
24	인천 남동구 도림동			취동나무울타 리	L:25	1식	일괄	1,400,000	1,282,000	1,341,000	곽×례 (1/1)	
25	인천 남동구 도림동			매실나무		1주	“					
26	인천 남동구 도림동			살구나무		1주	“					
27	인천 남동구 도림동			감나무		5주	“					
28	인천 남동구 도림동			키위나무	파고라위	1식	“					
29	인천 남동구 도림동			키위나무		2주	“					
30	인천 남동구 도림동			두릅나무		1주	“					
31	인천 남동구 도림동			대추나무		2주	“					
32	인천 남동구 도림동			봉숭아나무		2주	“					
33	인천 남동구 도림동			진잘래		1주	“					
34	인천 남동구 도림동			철쭉		2주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 사업명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도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수량)	단가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당초	편입					온누리감정 평가법인	통일감정평 가법인			
35	인천 남동구 도림동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골조	55/43.8	식	825,000	825,000	825,000	곽×례 (1/1)	
36	인천 남동구 도림동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골조	40/6.7	식	600,000	600,000	600,000	곽×례 (1/1)	
계								16,685,000	15,857,000	16,271,5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8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시설명 및 위치 : 주차장, 남동구 남촌동 512-65외 1필지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남촌동 512-65번지 일원	-	증) 6,184	6,184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6,184㎡	기 조성·운영 중인 주차장 부지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한 계획적·체계적 주차장시설 조성 도모

2. 주민공람기간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다.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85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3. 8. 30 ~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3)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면접시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3. 5. 6) 됨에 하위 규정의 면접시험 평정기준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 나. 잦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과의 형평성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 다.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녹지 직렬 중 조경 직류에만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가산대상 자격증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 인사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험위원의 임명 관련 제도 개선(안 제12조)
- 나. 면접시험 기준 관련 조문 삭제(안 제13조)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변경사항 반영(안 제14조)
- 라. 연구직공무원경력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변경사항 반영(안 제24조)
- 마. 특별승진임용기준 인정 기준 개선사항 반영(안 제25조의2)
- 바.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사항 규정 신설 등(안 제26조의3)
- 다.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자격증 변경(안 별표7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032-453-2193, FAX 032-453-21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난 2013. 5. 9.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면접시험 기준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면접위원에 포함하며,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자격증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험위원의 임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반영 (안 제12조)
- 면접시험 기준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3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변경사항 반영 (안 제14조)
- 연구직공무원경력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변경사항 반영 (안 제24조)
- 특별승진임용기준 인정 기준 개선사항 반영 (안 제25조의2)
-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사항 규정 신설 등 (안 제26조의3)
-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자격증 변경 (안 별표7의4)

3. 본 문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용시험·승진”을 “임용·시험·승진”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5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렬이어야 한다.”를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제17조제1항제10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 및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를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도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 중 “30일내에” 및 “한하여”는 삭제하고,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5조의2 중 “특별승진대상자”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및 출장소”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신 설>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 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전자기기 기 능 장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기 능 사 :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기타법령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야 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 동 위 원 소 취 급자(일반),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수 산 물 경 사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보 건	해양교통 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기 능 장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환경 기 능 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0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 비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금 속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화 공 화 학	기 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화 학	기 능 사 :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물 리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능 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농 업 연 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 식 품 개 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기 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기 능 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작 물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촌지도	원 예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잠업곤충 잠 업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농촌지도	임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기 능 사 :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u>임용시험·승진</u>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의사</u> 5. (생략)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u>제출하여야 한다.</u>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조(적용범위) ----- ----- <u>임용·시험·승진</u> ----- ----- ----- -----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삭제></u> 5.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 ----- ---- <u>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u>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u>민간전문가로</u> 하여야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 제14조제6항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 -----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 제13조 <삭 제> (2014.1.1)

현행	개정안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사무관리분야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0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 ----- ----- ----- ----- ----- ----- -----1퍼센트-----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u>졸업한 자로서</u>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u>직렬</u>이어야 한다. 3. (생략)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 <u>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u> ----- 2. ----- -----<u>직</u> -----<u>렬</u>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u>특별임용</u>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u>제17조제1항제11호</u> ----- <u>경력경쟁임용</u> ----- ----- -----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u>5급일반 승진시험의 횡수별로</u>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5급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u> 작성하고,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u>지도공무원</u>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계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u>지도직공무원</u> ---- ----- ----- -----

현행	개정안
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u>〈단서신설〉</u>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u>30일내</u>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u>한하여</u>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u>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u>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u>특별승진대상자</u>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단위 이상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 -----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 ----- ----- <u>〈삭제〉</u> ----- ----- <u>〈삭제〉</u> -----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 ----- ----- ----- <u>특별승진 심사대상자</u> ----- -----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u>출장소에</u>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① -- ----- <삭 제> ----- ----- ----- ----- ----- ----- ----- ②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 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나. 또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음.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및 내용 사항 규정 추가 (안 제1조)
- 나.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 사항 신설 (안 제3조)
- 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032-453-5013, 5030/ Fax 032-453-5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
----------	------

발의연월일 : 2013. 8. 29.

발 의 자 : 박 인 동 의원(1인)

찬 성 자 : 9명

□ 제 안 이 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음.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및 내용 사항 규정 추가 (안 제1조)
-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 사항 신설 (안 제3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2)

□ 본 문 : “별첨”

□ 신·구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택법」 제43조의3 및 제81조제1항
-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8항 및 43조의3”으로 하고 “관리업무와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업무와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으로 한다.

제3조 중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u>관리업무와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u>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u>쾌적한 주거환경 조성</u>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수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u>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u>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제43조제8항 및 43조의3의-----<u>관리업무와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u>----- -----<u>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u>-----.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u>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u>-----.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4조의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43조의3)

나. 안전관리 위탁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탁수수료에 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주택법 제118조 제4항)

다. 안전관리비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에 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제5조(안전관리비용 지원)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시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경우 우리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인천광역시의 예산 지원은 기대할 수 없음.

나. 추계결과

현재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84개소(아파트 75개소 연립주택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이 개소당 약4.5백만원(규모가 큰것은 추가비용 필요) 정도로 일시에 점검하는 것은 재정적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4년을 주기로 점검을 할 경우 매년 약 100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판단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가 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신설)	100	100	100	100	100	500
공동주택 관리업무및 활성화 비용(종전)	500	500	500	500	500	2,5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박인동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신설)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활성화비(종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9. 9.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3. 8. 29 ~ 9. 8(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만수6 -50	홍	김*승	담방로 53, 2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6.01	2013.9.9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9. 8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6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7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44-83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4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44-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44-65	2013.8.26	건물번호 중복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2013. 8. 26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0-5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간선헬수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신설	1	하수도	구월동 700-5	구월동 827	매소홀로 (대2-7호선)	832	8,472	-	

2) 하수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내 용	사 유
1	하수도	- 하수도 신설 - 연장 832m, 폭 2.4~13m - 기점 : 구월동 700-5번지 일원 - 종점 : 구월동 827번지 일원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와 하류부 상습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결정(신설)

- 지형도면 : “별 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45번길 5외 3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45번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38	2013.08.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3-6	2013.08.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3-12	2013.08.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90	2013.08.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2호

도시관리계획(동nek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동nek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nek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50	대1-20 논현동 26-2	소3-2 논현동 50-2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454	대1-20 논현동 26-2	소3-2 논현동 50-2	일반 도로	-	일부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변경 - 면적 : 당초(2,738㎡) 변경(2,756㎡) 증(18㎡)	도시계획도로(소3-1호선)상의 일부건물 저촉(B=1.0~1.3m, L=8.3m)으로 보상협의 지연 우려가 있어, 예산절감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로선형 변경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3호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용민원명 및 수수료

민원구분	수수료(원)	민원구분	수수료(원)
주민등록등(초)본	400	주민등록등(초)본 이해관계인	500
인감증명서	60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1,000
건축물대장(일괄, 총괄표제부)	500	토지대장	500(장당100원 추가)
세목별과세증명서	800	지적도	7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		

2. 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장

3. 발행장소 : 장수서창동주민센터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4. 발행년월일 : 2013년 8월 일

5.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 NIS213285번, NIS213286번

6. 인증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인증항목

가. 발행년월일

나. 발행기관명

다. 공인

라. 수입증지(소인문)

2013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